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조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㈜ 한국씨티은행

문의가능 전화번호 : (02) 3455-2504 / 3455-2567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 (채권)
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 (채권)
(종류 A, A-e, C, C-a, C-b, C-F)
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채권형), 신탁형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모자형

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12.04.09 - 2013.04.08

라. 집합투자업자: 미래에셋자산운용 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교보증권, 국민은행, 농협, NH 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동양증권, 메리츠증권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자산운용, 미래에셋증권, 부산은행, 산업은행, 수협중앙회, 신영증권, 신한금융투자, 아이엠투자증권, 외환은행, 우리은행, 우리투자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키움증권, 하나대투증권, 하나은행, 한국씨티은행, 한화증권, IBK 투자증권, SC 은행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- 2012.08.13 규약 개정

1) 제39조(보수) : 보수율 변경

C-b 수익증권	집합투자업자	판매회사	신탁업자	일반사무관리
변경전	연 0.30%	연 0.25%	연 0.04%	연 0.02%
변경후	연 0.30%	연 0.15%	연 0.04%	연 0.02%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 사항 없음.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.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.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선임일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(원)	계약방법
2007.01.25	안진회계법인	1년	4,180,000	서면

* 회계감사인 선임비용은 1년에 한번 회계감사 수행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임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합니다.

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및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본 집합투자기구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.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.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습니다.

- 2012.04.10 기준가격 변경 있었습니다.

종류	변경전 기준가격	변경후 기준가격	변경전 과표 기준가격	변경후 과표 기준가격	사유
운용	1015.40	1000.03	1015.40	1000.03	자펀드의 모수익증권 매수 오류
종류 A	1009.00	1000.00	1009.00	1000.00	
종류 A-e	1015.38	1000.01	1015.38	1000.01	
종류 C	1015.37	1000.00	1015.37	1000.00	
종류 C-F	1015.39	1000.02	1015.39	1000.02	

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 사항 없음.

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9 조 제 1 항 제 1 호 (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·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감시의무 면제)에 해당 되어 본 항목은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.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, 투자원리금에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.

-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(www.miraeasset.co.kr) 및 금융투자협회(www.kitca.or.kr)의 홈페이지를 이용 할 경우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자산 결제 및 보관을 위하여 씨티은행 홍콩(Citibank N.A. Hong Kong Branch)을 해외보관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보관 대리인은 동 업무를 각국의 보관 대리인에게 재위임 할 수 있습니다.